

미용업종사자의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해결과 정책적 과제*

Conflict resolution and political tasks on the usage of beauty care
devices by beauty artists

김주리**
Ju-Ri Kim

〈목 차〉

- I. 서 론
 - II. 미용업 개념과 우리나라 미용업 관련 법규
 - III.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용기기사용에 관련 법규 비교
 - IV. 미용업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하여 발의되었던 제정·개선안과 정책적 과제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미용기기, 의료기기,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산업, 뷰티산업진흥법

* 본 논문은 ‘김주리, 미용업 및 미용업 종사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을 보완·수정하였음.

* 본 연구는 2017년도 장안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 사업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장안대학교 건강과학부 뷰티케어과 교수.

I. 서론

현대사회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서비스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미용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뷰티산업의 발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미용관련 산업이 세분화·고급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미용업 종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미용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¹⁾도 증가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미용업 발전과 상반되게 우리나라 미용업 관련 법규는 개선되지 않고 미용업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중위생관리법이 미용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국제법과 맞지 않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다른 유사 직업이나 업무영역이 비슷한 직업 단체들과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나 규정이 없어 외국에서는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미용기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미용종사자가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에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기기법 제2조³⁾에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미용인들의 기기사용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합리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6년 12월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피부미용기기 규정마련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에서 실행될지는 미지수 이다.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

- 1) 뷰티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 양상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미용전문 교육기관은 사설학원을 제외한 미용고등학교, 미용전문기술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을 포함하여 그 인증기관이 전국에 170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사설학원까지 포함하면 미용인력 양성기관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알리미, 한국일보 2015. 8. 13.자 참조.
- 2) 한국고용정보원의 2008년「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피부미용사의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22.2%, 4년제 정규대학졸업 이상이 11.7%로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며, 이는 피부미용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회⁴⁾ 제18차 회의에서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뷰티산업 육성방안⁵⁾을 마련하고자 뷰티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도 미용기기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미용법 개선에 대한 제안은 2000년 이후 국회에서 10여차례 발의⁶⁾ 되었고, 여기에도 미용기기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용기기와 관련된 개선 사항은 없었다.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피해는 피부미용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미용기기를 개발하고 제조하여 수출·수입하는 미용산업에도 문제를 야기시킨다. 미용기기를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는 매우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용기기를 수입할 때도 미용기기 등록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료기기로 재등록 절차와 비용이 발생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미용산업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용업에 관한 관련 법규와 외국의 법규를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과거에 국회와 점부부처에서 제안되었던 개선안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본 논문은 미용종사자가 미용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용법 개정을 위하여 입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용업 개념과 우리나라 미용업 관련 법규

1. 미용업의 개념

미용의 ‘Beauty’는 ‘아름답다’의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Pulcher, Pulchem’에 기초를 두고 있다.⁷⁾ 미용업의 좁은 의미에 있는 미용, 특히 화장품과 관련된 산업을 위미한다. 그러나 미용업이 발전한 현대산업에서 넓은 의미의 미용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한 미적 디자인, 감동, 체험, 세련됨이 가미된 모든 소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더 넓게 성형, 패션, 디자인, 스파, 영상, 헬스, 화장품, 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두피관리, 가발 등의 미용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포함한다.⁸⁾ 선행논문에서의 미용산업의

4)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초에 설치한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 매월 1회 개최되는 회의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임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고 점검하였는데, 2013년 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5)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경쟁력 강화 방안, 2009, 3면.

6) 이재선의원이 2011년 2월 8일에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은 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내용 중에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에서 분리하는 내용이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다.

7) 김형숙 외, 「미용학개론」, 영림미디어, 2015, p.8.

정의를 살펴보면 미용과 관련 된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김정원의 논문 “한국뷰티산업의 현황”에서는 미용업을 “뷰티산업을 “소비자의 뷰티생활 요구를 만족시키는 뷰티 상품의 생산, 서비스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모든 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헤어산업, 피부산업, 네일산업, 메이크업산업, 화장품 산업 등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⁹⁾ 또 다른 연구인 2010년 이경란 외 논문 “뷰티산업의 문화 마케팅을 접목한 기업이미지 향상이 대한 사례연구”에서는 뷰티산업을 “인간의 미와 신체와 관련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수한 가치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진형 미래 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헤어,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을 의미하나 그 속에는 미적 디자인, 감동, 체험, 세련됨 등이 가미된 다양한 체험과 소비를 모두 포함하는 산업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¹⁰⁾. 이렇듯 미용업의 범위는 생산과 판매·서비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관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용업에 대한 법적 정의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용업은 직무에 따라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미용, 이용으로 5가지 직무로 분류되어 있다.

2. 우리나라 미용업 관련 법규

현재 미용업에 관련된 법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이 규율대상이며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제7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8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제11조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제11조 과징금처분·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영업 금지, 제12조 청문, 제13조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 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제15조 공중위생감시원, 제16조 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17조 위생교육, 제18조 위임 및 위탁, 제20조 벌칙, 제21조 양벌 규정, 제22조 과태료, 제2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8) 안인환, “뷰티테마단지 지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p.7.

9) 이윤진·김기영, “우리나라 뷰티산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미용학회」, 제16권 제3호, 2010, 한국미용학회지, pp.644-651.

10) 이경란·김민선, “뷰티산업의 문화 마케팅을 접목한 기업이미지 향상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미용학회」, 제16권 제1호, 한국미용학회지, 2010, pp.234-24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5항은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는 이용업을 하는 자와 미용업을 하는 자의 준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4항 제1호에는 “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에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미용인의 업무역할을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는 미용종사자들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용기기들은 대부분 의료기기로 승인되어 시판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미용인종사자가 사용하는 미용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리되기 때문에 미용종사자가 사용할 수 없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자격 취득 요건을 정하고 있다¹¹⁾. 이 면허관련 사항에서 규정된 미용관련 학과에서는 미용기기사용에 관한 교육내용이 담긴 미용기기학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4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자도 미용사 면허를 취득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미용사(피부) 자격 필기시험의 내용에는 피부미용기기학 과목이 있고 이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용관련학과에서 미용기기학 교과에 대한 교육과 면허시험에서 미용기기학 교과에 대한 시험을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미용사들은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²⁾. 우리나라에서는 미용기기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고 미용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의료기기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미용기기의 대부분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의료기기법 제2조는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

11) 미용사 면허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8조,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6조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12) 외국의 미용면허제도에도 미용기기에 대한 이론평가 시험과 미용기기를 이용한 실기평가도 이루어 진다. 그리고 국제 미용경진대회에서도 미용기기를 이용한 얼굴피부 관리와 전신관리 종목이 있어 미용사의 미용기기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어 있다.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제2조 제1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미용인들이 사용하는 기구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불법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같이 규율되고 있는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과는 다르게 대인접촉성이 높고 국가인정 면허를 취득하는 등 업무상 다른 특성이 있어 관련법규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미용에 대한 뷰티산업진흥법을 제정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의 내용을 수정하자는 개선안이 수차례 제안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음 IV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Ⅲ. 우리나라와 외국의 미용기기사용에 관련 법규 비교

1. 피부미용사 자격취득 조건 비교

(1) 미국 피부미용사 자격 제도

미국에서 피부미용사 자격을 취하려면 주별로 법정 이수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¹³⁾ 600시간 이상의 실습과 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수기간 동안 이/미용법과 위원회규칙, 피부관리에 이용되는 제품, 건강과 안전 위험물질, 미용과 연관된 전기이론, 소독과 위생, 세균학, 해부학, 생리학, 안면 손에 의한 트리트먼트, 화학제품, 속눈썹, 메이크업, 위원회의 권장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진다¹⁴⁾.

(2) 영국 피부미용사 자격 제도

영국은 미용전문 공·사립학교에서 1,500시간 이론 및 실습 2년 수료 후 영국 피부관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피부미용사 자격이 주어진다. 영국의 미용사 자격은 레벨1, 2를 취득 후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테스트를 거친 후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3) 미국의 미용사자격을 취하기 위한 법적 이수시간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최소 버지니아 아일랜드 250시간과 최대 앨라바마 1,500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에서 법적 이수시간을 600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14) 황순옥 외,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8, pp.77-90.

자격증 관련 교육내용은 인체생리학, 해부학, 영양학, 성분학, 화학, 향장학, 경영학, 소독학, 위생법규, 탈모, 메이크업, 얼굴전신관리(실기), 미용전기학 등 이다¹⁵⁾.

(3) 일본 피부미용사 자격 제도

일본은 미용기술학교 1년 관정 수료 후 1년 미용실 현장실습의 300~1,200시간을 이수하여 협회자격 시험응시 자격증 부여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미용사 자격은 우리나라 미용사(일반)과 미용장 자격과 같이 수준별로 300시간이수과정과 1,000시간 이수과정으로 나뉜다.

이수 기간 동안 피부과학, 생리해부학, 화장품학, 미용전기학, 영양학, 위생소독학, 경영학, 메이크업, 탈모, 전신관리, 실기(손 기본동작)의 교육이 이루어 진다¹⁶⁾.

(4) 한국 피부미용사 자격 제도

우리나라 미용사자격증에 관련된 규정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의 내용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의 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기술자격점증원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¹⁷⁾. 국가자격시험은 의무교육 이수 시간은 없고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각각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하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되고 자격증 취득한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피부미용자격시험 필기과목은 피부미용학, 피부학,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과 법규 등이고 실기과목으로는 피부분석표작성, 눈썹 정리 및 왁싱, 손을 이용한 얼굴관리, 팔·다리관리, 림프드레나주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미용기기 분류

일반적으로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는 확대경, 피부미용측정기, 스티머, 적외선램프, 이온투입기, 저주파기, 고주파기, 초음파기,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등이 있다. 이러

15) 황순욱 외,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8, pp.77~90.

16) 최연식 외,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pp.64~65.

17)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한 미용기기 중 진공흡입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용목적의 기기들은 외국에서는 미용기기로 분류되어 사용되거나 의료용으로 승인되었지만 인체위해도가 낮은 것은 미용종사자의 사용이 허가된다.

〈표 1〉 피부미용기기 관리 현황

피부미용기기 수입 시 기기분류 현황 비교 ¹⁸⁾				
품목	사용범위	기기분류	제조국	우리나라
저주파	얼굴. 전신	미용기구 의료용구 아님	독일 스페인	의료기구
초음파	얼굴. 전신	미용기구 의료용구 아님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의료기구
석석기기 (진공흡입기)	얼굴. 전신	의료용구 아님	독일	의료기구 아님
스티머	얼굴. 전신	미용기구	독일 스페인	의료기구
고주파	얼굴	미용기구	독일 스페인	의료기구
선텐기기	얼굴. 전신	미용기구	독일	의료기구
고주파온열	전신	미용기구	스페인	의료기구
이온투입기	얼굴	미용기구	이탈리아	의료기구
리프팅기	얼굴	미용기구	독일 스페인	의료기구

〈표 2〉 국내와 국외의 피부미용에 사용되는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분류 비교

품목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분류 ¹⁹⁾			
	국 내		국 외	
	의료기기	피부미용기기	의료기기	피부미용기기
온타올찜기	○			○
적외선램프	○			○
선텐기	○			○
확대경	○			○
스티머	○			○
파라핀	○			○
이온투입기	○			○

18) 황순옥 외,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8, p.98.

품목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의 분류 ¹⁹⁾			
	국 내		국 외	
	의료기기	피부미용기기	의료기기	피부미용기기
스킨스크럽	○			○
초음파	○			○
고주파	○			○
저주파	○			○
리프팅기	○			○
진공흡입기		○		○

<표 1,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외국에서 미용기기로 허가되어 사용되는 기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법규에는 미용기기에 대한 분류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미용종사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용기기를 수출 또는 수입하는 산업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용기기를 수입할 경우 미용기기로 분류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고 등록해서 수입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하고, 미용기기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외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의료기기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시 미용기기로 승인받아야하는 절차와 비용이 발생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는 우리나라 미용기기산업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3> 외국과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사 자격증 관련내용 비교

국가	교육내용 ²⁰⁾
미국	이/미용법과 위원회규칙, 피부관리에 이용되는 제품, 건강과 안전 위험물질, 미용과 연관된 전기이론 , 소독과 위생, 세균학, 해부학, 생리학, 안면 손에 의한 트리트먼트, 화학제품, 속눈썹, 메이크업, 위원회의 권장 교육 등
일본	피부과학, 생리해부학, 화장품학, 미용전기학 , 영양학, 위생소독학, 경영학, 메이크업, 탈모, 전신관리, 실기(손 기본동작)
영국	인체생리학, 해부학, 영양학, 성분학, 화학, 향장학, 경영학, 소독학, 위생법규, 탈모, 메이크업, 얼굴전신관리(실기), 미용전기학
한국	이론시험 :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피부미용기기학 ,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실기시험 : 얼굴피부관리, 전신피부관리

19) 정보연, 김은화,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 제6권 제1호, 2010, 대한피부미용학회지, p.158.

20) 황순옥 외,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8, p.79.

다음 <표 3>에서 국외와 국내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영국과 한국 모두 미용기기사용에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용기기를 다루려면 전기나 기기에 대한 기초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외국과 마찬가지로 미용기기를 다루기 위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의 미용사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미용기기를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4> 외국과 우리나라의 피부미용사 업무영역 관련내용 비교

국가	업무영역(피부미용)21)
미국	피부관리와 손톱관리, 탈모, 화장품살균제, 토닉, 로션, 크림의 사용으로 얼굴과 목, 팔, 상체의 관리, 양손기구, 장치, 기타 재료에 의한 얼굴, 목, 상체, 마사지 클렌징 등
일본	얼굴관리, 전신관리, 메이크업, 탈모
영국	얼굴관리, 전신관리, 두피손질, 화장, 탈모
한국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

우리나라에서 미용종사자가 미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법률적 근거는 <표 4>의 피부미용사 업무영역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된다. 외국의 피부미용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과 우리나라 피부미용사 업무영역22)의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피부미용사 업무영역이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규정이 문제가 된다. 일반적인 생각에서 미용종사자가 의료기기나 의약품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 법규의 어디에도 미용기기에 관련된 문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미용기기들이 의료기기로 등록·허가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미용기기를 제조하여 허가받는 과정에서 미용기기에 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미용기기는 의료기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23)에 의해 관리된다. ‘의료기법 제2조 “의료기기”란 사람이

21) 보건산업진흥원, 앞의 보고서, p.78.

22) 피부미용의 업무영역에 대한 다른 직업단체들과 의견충돌은 미용기기사용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피부관리 범위, 동작,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안마사 협회에 마사지용어 사용과 지압과 같은 누르는 안마 행위는 안마사 고유의 업무영역이므로 피부미용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 제82조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과의 관련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 한계)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규칙 제2조에서 ‘마사지’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데, 안마사들은 마사지는 안마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속하므로 다른 직업 종사자가 이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이란 교류 또는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11조의2제1항에

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동법 제3항의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해당하여 의료기기로 허가 등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미용의 목적으로 제조된 미용기기들조차도 의료기기가 되어 유통·사용하게 된다. 이것은 미용종사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의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게 유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률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행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만 불법이 되는 모순된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나라에만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외국의 경우 미용기기의 허가과 사용에 대하여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규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고 미용기기²⁴⁾를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용의 목적으로 제조된 인체 위해성이 낮은 기기는 미용종사자의 사용을 허가 하고 있다. 의료기기와 미용기기는「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²⁵⁾에서 규정하고 있고 관리의 준수사항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기기에 적시되어 있는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미용인에게도 그 사용이 허용된다²⁶⁾. 미국은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을, 일반 공산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안전법을 적용하고 있고 미용기기를 지칭하는 'cosmeceutical'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²⁷⁾

(2) 영국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규

영국도 미국과 같이 미용기기²⁸⁾를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영국 식약청인 MHRA는 의료기기를 “의료 목적을 위해 특별히 의도 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한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은 질병예방에 사용된다고 간주 될지라도 의료기기로 간주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²⁹⁾. 영국 식약청에서는 의료목적으로 의도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미용기기(Comestic Devices)란 외모를 향상시키는데 이용되면서도 건강 상의 유익은 제공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 미국법은 미용기기의 개념을 별도의 법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25) Federal Food, Drug and Cometic Act의 약자로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이 포함된다. 미국은 1880년 불량식품과 불량약품을 통제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였고, 1906년 의회에서 식품·의약품법이 제정되었다.

26) 미국식품의약품국 홈페이지, 2015.12.18. 접속 www.fda.gov

27) 임광섭, “미국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2015. 5), 법제처, 7면.

28) 미용기기(Comestic Devices)란 외모를 향상시키는데 이용되면서도 건강 상의 유익은 제공하지 않는 기기를 말한다. 미국법은 미용기기의 개념을 별도의 법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29) 의료기기의 경계, 2016년 5월, MHRA(영국 식약청), 입법에 대한 지침, 「영국 식약청」, 2017.5.8. 접속 <https://www.gov.uk/guidance/decide-if-your-product-is-a-medicine-or-a-medical-device>

된 기기만을 의료기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 목적이 아닌 기기 사용의 범위를 확대 해 놓았다. 단 피부미용사의 미용기기 사용은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일본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규

일본은 ‘손기술, 화장품, 기기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피부를 미화하고 체형을 보정하는 등의 지도 또는 시술을 하는 사업소’에스테(エステ)와 ‘미용과 진료과목을 가진 의사에 의해서만 진료와 시술이 행해지는’ 미용의료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다.³⁰⁾ 미용기기와 관련된 사항은 업계의 자율적 관리에 위임하고 있다. 피부미용공업회가 품질보증기구(JQA)의 지원을 받아서 미용기기의 안전규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면, 에스테는 노무의 제공이 특정한 노무의 계속적 제공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과 효과에 관하여 현저히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방지하고 있다.

(4) 한국의 미용기기 사용과 관련된 법규

우리나라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을 뿐,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없다. 또한 현행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3조 제1항에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등급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된다³¹⁾. 이 법에 의하여 저 위험군 기기인 경피신경전기자극치료 (TENS: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전기자극치료(ETS) 등도 의료시술로 분류되어 있어 피부미용을 위한 기기들도 피부미용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료기기법에 의해 인체에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기기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모든 미용을 위한 기기들이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용종사자는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용실에 보유할 수도 없다. 미용기기는 피부미용을 하기위하여 필

30) 消費者委員會, エステ・美容医療サービスに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建議, 2011. 12.

31) 의료기기 시행규칙 「별표1」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위해도에 따른 등급으로 분류한다. 1) 1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2) 2등급: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3) 3등급: 중중도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4) 4등급: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나. 가목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체와 접촉하고 있는 기간. 2) 침습의 정도. 3) 약품이나 에너지를 환자에게 전달하는지 여부. 4) 환자에게 생물학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용종사자의 합법적으로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 판매자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으로 등록하여 미용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의료기기법 제2조 제3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료기기 임대업자는 의료기기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미용기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는 현실은 미용기기사용 실태에 대한 파악을 힘들기 하고 안전한 미용기기사용에 관한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현행의 인체의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피부미용기기를 합법화하는 것이 미용기기에 필요한 규격과 요구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기기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미용업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하여 발의되었던 제정·개선안과 정책적 과제

미용산업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급속한 성장을 함으로서 최근 10여년 동안 이에 알맞은 법제정을 위하여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시도되었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발의된 미용업 관련 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미용업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안

2000년 2월 24일자와 2009년 9월 7일에 조성준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안은 미용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미용이 관련산업의 기초로서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미용과 관련된 공중위생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17대 국회의원 2007년 7월 4일자와 2007년 7월 13일자로 문희 의원이 ‘미용업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법안은 공중위행관리법의 일부인 미용업관련법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미용사회는 공중위생관리법은 다른 공중위생업에³³⁾ 비하여 대인접촉성, 면허대상성, 대학교육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현행 공중관리위생법이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국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는³⁴⁾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32) 의료기기법 제2조 ③ “의료기기취급자”란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를 말한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 2. 의료기기 수입업자 3. 의료기기 수리업자 4. 의료기기 판매업자 5. 의료기기 임대업자.

33) 이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보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였다. 제안된 미용사법안은 미용사를 세분화하였고 외국의 미용사 자격이 있는 자는 국내에서 면허를 부여하도록 제안하였다. 2007년 10월 1일자와 2007년 10월 16일자로 정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미용업법안과 미용업법안, 18대 국회에서 2009년 5월 7일에 손범규 의원이 ‘미용업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이 주요내용은 미용사와 미용사를 구분하고 미용사도 업무영역에 따라 세분화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현재 세분화되어 면허도 분리되어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도입하고 면허를 수여하는 주체를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격상시켰다.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은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면허취득은 현행보다 어렵게 변경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미용인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에서 최초로 분리하고자 한 개선안은 2011년 2월 8일자로 자유선진당 소속 이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안’에서 부터이다³⁵⁾. ‘뷰티산업진흥법안’은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안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설립, 뷰티산업단지조성, 뷰티해외수출산업육성, 뷰티관광객 유치 등 뷰티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하고자 하였다. 뷰티산업진흥법안 제2조 5항에 “미용기기란 머리카락, 피부 및 손·발톱을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이 것을 시행하기 위한 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³⁶⁾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안을 검토 후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인 답변으로는 제2조의 미용기기 제도화는 미용기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됨으로써 과도한 규제를

34)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사)한국미용사회, 사)한국피부미용사회.

35) 이 법안에서 미용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었다. 의료계는 저주파·초음파·고주파 응용미용기와 적외선·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등이 미용기기로 분류 돼 유사 의료행위를 조장, 합법화함으로써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 때문에 의료계는 법안을 지지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뷰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민영 기자, 뷰티산업 진흥법, 의료계 반발불구 추진에 가속도-신성장 동력산업 조성차원으로 지원...정부의지 강해, 2011년11월21일 의료계전문사이트, medifonews,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78848>)

36) 뷰티산업진흥법안 제6조(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 ① 뷰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뷰티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뷰티진흥산업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3. 뷰티산업분야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뷰티산업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받고 있어 미용기기산업 및 피부미용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부작용 우려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이 있지만 각각의 장비에 관한 사용법, 관리기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인하여 이법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2011년 5월 16일자로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용사법안’은 미용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미용업의 정의를 다시하고 미용면허에 대한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용기기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한 것은 2014년 12월 22일 남인순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남인순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기에서 미용기기의 분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미용기기의 정의³⁷⁾, 미용기기의 범위와 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 광고의 금지 등에 대한 규정³⁸⁾을 하여 미용기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미용종사자의 미용기기사용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 발의 안을 반대하였다. 남인순의원의 발의 안에 대한 의료업계에서는 “미용기기 제도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 현재 미용업서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부작용에 대해 우려가 높다. 또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자극기 등은 통증 주름제거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미용기기 포함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은 “의료업계의 입장을 수렴해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는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기기에 대한 안전성, 사용법, 관리기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성 확보방안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감독기관과 지정,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이 엄격히 결정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남 의원은 “그 동안 정부는 피부미용기기 관련해 의료계와 미용업계 사이 마치 직역간 갈등인 것처럼 비춰져 의견을 내는 것에 조심스러워 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정부가 중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산업 창출로 인해 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전했다³⁹⁾.

그리고 미용산업에 대한 벌금제의 개선을 위하여 김춘진의원이 2015년 1월19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

37) 남인순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9.“미용기기”란 얼굴·머리카락·피부·손톱·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38) 남인순의원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미용기기위원회), 제8조의3(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제8조의4(미용기기의 기준규격), 제8조의5(미용기기의 안전관리 등), 제8조의6(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의 금지)에 미용기기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된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였다.

39) 자료 출처: 이나리, 피부미용기기 법제화, 기준규격 합의점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http://www.etnews.com/20150116000185>, 2015년 1월 16일 기사.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제20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22조 제1항 신설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자고 하였다. 이 개정안은 과도한 벌칙을 삭제하여 공중위생업자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서 미용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미용업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정부의 개선안

미용법 개선을 위한 정부부처의 연구도 계속되어 왔다.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의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년 보건복지부의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2012년 보건산업진흥원의 “뷰티산업정책 제도 조사 분석”, 2015년 법제처의 “미국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관련 법제” 등 보고서 형식의 연구가 법개정을 위한 기본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의 입법논의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미용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9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⁴⁰⁾ 제18차 회의에서도 여성 일자리 창출과 뷰티산업 육성방안⁴¹⁾을 마련하고자 뷰티산업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뷰티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은 뷰티산업을 관광 수출 상품으로 육성하고 뷰티산업의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국회에서는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뷰티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인력양성, 뷰티지원센터 설립, 뷰티산업단지 조성, 해외수출산업 육성, 뷰티관광객 유치 등 뷰티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흥방안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었다. 여기에도 미용기기사용 규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6년 12월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는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점, 식품위생업 등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1개의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 14개의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⁴²⁾을 제시하였다⁴³⁾. 이 중 피부미용기기 규정마련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40)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초에 설치한 대통령 자문 기관이다. 매월 1회 개최되는 회의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임원들이 안건을 상정하고 점검하였는데, 2013년 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41)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경쟁력 강화 방안, 2009, p.3.

42)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에서는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개선과제를 과도한 영업활동 제한완화, 위생교육 부담완화, 제출서류 간소화의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과도한 영업활동제한; ①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 (현행) 업종(5개)이 다른 별도의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추어야 함 ▶ (개선) 별도의 사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으로 입차비용 절감 * 미용업종(5) : 일반미용, 피부, 손톱·발톱, 메이크업, 미용종합 ② 피부미용기기 제

있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약체계를 공고히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 개선 방안 중 미용업에 해당되는 것은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영업개시 전 미용업종별 위생교육 통합 등 3가지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면 미용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피부미용기기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현실에서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3. 미용기기사용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과제

미용기기 사용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미용업에서 피부미용업을 다시 정의하여야 한다. “피부미용업이라 함은 신체의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보호·개선하기 위하여 피부상태를 분석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하여 제모·눈썹손질·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팩, 마사지)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용기기사용에 대하여 명시한다. 그리고 피부관리 영역에 신체의 모든 피부⁴⁴⁾와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사지라는 용어를 미용업에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규정하여 미용목적으로 제조된 미용기기를 의료기기와 분류하여야 한다⁴⁵⁾. 미용기기 정의에는 미용기기의 범위와 기준규격에 대한 사항도 포함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

도화 추진 ▶ (현행)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 ▶ (개선)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한 미용서비스 산업 촉진 ③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 (현행) 차량의 옥외광고는 사업용 차량(시내버스, 택시 등)만 가능 ▶ (개선) 푸드트럭의 옥외광고 허용으로 다양한 광고 수익 창출.

2. 위생교육부담완화: ①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행)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 완화 ②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 (현행) 식품위생업은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개선) 휴업기간 중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하여 부담완화 ③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 (현행) 식품제조업이 식품운반업 등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개선) 식품제조업자가 유통·판매 등의 업종 추가시 위생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
3. 제출서류 간소화: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 (현행) 동일인이 복수의 미용업 신고 시 업종별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미용업종에 관계없이 1회 통합교육으로 교육부담 완화 ②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 (현행) 식품위생업은 휴업 중에도 위생교육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 (개선) 휴업기간 중에는 위생교육 등을 유예하여 부담완화 ③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 (현행) 식품제조업이 식품운반업 등을 추가할 경우 별도의 식품위생교육 이수 ▶ (개선) 식품제조업자가 유통·판매 등의 업종 추가시 위생교육 받은 것으로 간주. [출처]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 중소기업청.

43) 중소기업청 대표 블로그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897749303>

44) 피부관리의 영역을 어디까지 허용하여야 하는 문제에서 의료계와의 마찰이 있다.

45) 2014년 남인순의원외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제9항에 미용기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하여 미용기기의 사용범위, 안전관리, 과대광고 금지, 미용기기 관리를 위한 감시 체제도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교육도 현행보다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이수시간이나 실습시간을 이수하여야 미용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피부미용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개정의 시도는 과거에 수차례 시도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의하여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미용계와 의료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기구가 설립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재판정이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기초하여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단독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의 실체 등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⁶⁾. 미용기기사용에 대한 의료계와 미용계의 견해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재절차가 필요하다. 중재는 소송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전문가에 의해 해결됨과 동시에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⁴⁷⁾. 중재법은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이러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중재인에 의하여 미용기기에 관한 문제가 판단된다면 미용계보다 사회적 우위에 있는 의료계에 힘에 밀려 과거에 통과되지 못하였던 미용관련 개정·개선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V. 결론

사람들의 건강과 미용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미용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전문인력 양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용산업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낮은 규제에 의하여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미용업무가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대 사업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기 어려움을 겪어 지역사회의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용업은 대기업이 아니라 다른 단체의 직역이기주의 때문에 미용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용기기는 있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미용자격증을 취득한 미용종사자는 미용기기를 사용하기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미용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의료기기로 분리되어 미용종

46)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3, p.61.

47)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12, p.144.

48) 김경배는 2008년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연구”에서 이러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판단기준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자가 미용기기 사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처한다는 것은 미용업종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들의 미용서비스를 받을 권리조차 침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미용업과 관련된 법규를 검토하고 외국의 미용기기사용에 대한 법규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피부미용공업회에서 일본 품질보증기구(JQA)의 지원을 받아 23개 제품의 안전규격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직접적인 규제 법률은 없지만, 이와 유사하다. 미용사의 자격 조건을 주정부의 제정법으로 규제하고 면허제로 운영한다. 특히 미국은 피부미용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명시해 유사 의료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미용기기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용권한의 범위를 분명하게 구획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용기기에 대한 규정과 관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용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미용법 개선안과 정부부처의 미용법 개선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과거 수차례 미용법에 대한 개선안과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미용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의료계 반발때문인데 의사들은 ‘미용인의 기기사용은 많은 국민들이 부작용으로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야기시킨다’라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법의 규율 속에 편입시켜 미용업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기기로 고착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미용기기의 은밀한 이용과 불법적 시술이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키고, 미용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확대 될 수도 있다.

피부미용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서 법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미용기기를 피부미용실 등에서 현장 수요가 높고 인체에 대한 위해도가 낮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분류하여 피부미용 품목으로 정하여 피부미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 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긴밀한 협의 하에 피부미용기기의 종류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을 통해 피부미용기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사항 등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미용산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하여 미용기기를 의료기기로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을 국제적인 환경에 동화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용기기의 법률을 제정·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사직업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사직업단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미용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미용기기의 범위·규격·관리를 규정하는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조가 되지 않을 시에는 중재기구를 설립하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수미,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3, pp.59-84.
- 김경배,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연구”, 「중재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8.3, pp.31-47.
- 김대현 보건복지회 전문위원, “손범규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0.12.
- 김승기 보건복지회 수석전문위원·김세현 입법조사관, “남인순의원·김춘진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5.2.
- 김유진, “미용업법안(제7091호)검토보고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07.
- 김정원, “한국뷰티산업의 현황”,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09, pp.1-5
- 김주리, “미용업 및 미용업 종사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연구”, 「동국대학교 일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6
- 김춘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김춘진의원실」, 2015.1.9.
- 김형숙 외, 「미용학개론」, 영림미디어, 2015.
- 남기성 외,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2008.
- 남인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발의안”, 「남인순의원실」, 2014.12.22.
- 문희, “미용업법안”, 「문희의원실」, 2007.7.4./7.13.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뷰티경쟁력 강화 방안”, 제1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9,
- 보건복지회 수석전문위원, “문희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07.11
- 보건복지회 수석전문위원, “정형근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07.11.
- 손범규, “미용업법안”, 「손범규의원실」, 2009.5.7.
-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12, pp.141-160.
- 안인환, “뷰티테마단지정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1.
- 이경란·김민선, “뷰티산업의 문화 마케팅을 접목한 기업이미지 향상에 대한 사례연구”,

- 「한국미용학회지」, 제16권 제1호, 한국미용학회, 2010, pp.234-243
- 이재선, “뷰티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뷰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자료집”, 「이재선의원실」, 2010.8.
- 이재선, “뷰티산업진흥법안”, 「이재선의원실」, 2011.2.
- 임광섭, “미국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 관련 법제”, 「최신 외국법제정보」, 법제처, 2015. 5.
- 정보연, 김은화, “피부미용실에서의 피부미용기기 사용실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제6권 제1호, 대한피부미용학회, 2010. pp.154-164
- 정재룡 보건복지회 전문위원, “이재선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1.6.
- 정재룡 보건복지회 전문위원·최남근 입법조사관, “신상진의원 대표발의 미용사법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위원회」, 2011.6.
- 정형근, “이미용업 법안”, 「정형근의원실」, 2007년 7.4/10.1.
- 조성준, “미용사법안”, 「조성준의원실」, 2000.2.24.
- 최연식 외,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2.
- 황순욱 외,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피부미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8.
- 消費者委員會, エステ・美容医療サービスに関する消費者問題についての建議, 2011. 12. pp.1-2.
- 이나리, “피부미용기기 법제화, 기준규격 합의점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2015.1.16.자. 접속일 2015.10.15. <http://www.etnews.com/20150116000185>
- 이민영, “뷰티산업진흥법, 의료계 반발불구 추진에 가속도” 「medifonews」, 2011.11.21.자, 접속일 2015.10.15.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78848>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2016.12.29. 접속일 2017.05.05. <http://blog.naver.com/bizinfo1357/220897749303>
- 영국 식약청홈페이지, 2017.5.8. 접속 <https://www.gov.uk/guidance/decide-if-your-product-is-a-medicine-or-a-medical-device>
- 미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 2015.12.18. 접속 www.fda.go.kr

ABSTRACT

Conflict resolution and political tasks on the usage of beauty care devices by beauty artists

Ju-Ri Kim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Key Words : Beauty care devices, Medical devices,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industry status, Beauty industry Promotion Act.